

<현장실습 참여가능 기업>

- 1일 8시간(주5일제), 최소 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
- 4주 기준 20만원 이상 실습비 지급이 가능한 사업장
 - ※ 비영리기관은 역량개발센터와 협의 후 실습비 미지급여부 결정 가능
 - ※ 비영리법인(민법 32조) :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
- 상시 근로자 수 10%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
- 현장실습 불가능 기업체 : 소비 향락단체, 영업정지, 징계 중,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기업, 다단계 판매 업체, 인력 파견업체, 연수내용이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,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

<실습기간>

-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근무 시간 : 4주, 160시간 이상 근무
- 1일 8시간(주5일제), 1주 40시간 근무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/법정공휴일, 참정권행사일 포함)
 - ※ 연장근무(18시~22시) : 학생의 동의를 얻어 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가능
 - ※ 야간근무(22시~익일 6시) : 불가능(금지)
 - ※ 현장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무 후 1일의 휴일 사용가능
해당 휴일은 1일 8시간으로 인정
-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~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(파트타임제 신청불가)

<현장실습 지원비>

- 학교 : 4주 기준 30만원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
- 기업 : 4주 기준 20만원 이상 실습비 지급 필수

담당부서 : 동국대학교 학생처 역량개발센터(2260-4940)